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939
----------	-----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 □ 제안이유

-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 송의동 180-2번지 외 12필지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건과
-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시행자인 피에라인천 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중구 운서동 1632번지 외 16필지에 「밀라노디자인시티·트리엔날레관」을 신축하여 우리시에 기부함에 따라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 주요내용

### 1. 도시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지번	재산종류	면적	기준가격	재산관리관
토지	남구 송의동 180-2 외 12필지	일반재산	1,973.9	1,594,351	체육진흥과장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출자금액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2개 이상 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2. 밀라노디자인시티 · 트리엔날레관 건물 기부에 따른 채납

○ 기부채납 재산 현황

(단위 : m<sup>2</sup>, 천원)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기부자	재산관리관
중구 운서동 1632번지 외 16필지	건물	7,934.82 (지상2층)	11,473,000	피에라인천 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	용유무의개발 과장

※ 기준가격 : 공사원가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총괄표	.....	4
■ 재산의 목록(취득)	.....	5
■ 재산의 목록(처분)	.....	7
■ 관련자료		
①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추가 현물출자 계획	.....	13
② 밀라노디자인시티 · 트리엔날레관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 계획	.....	17
■ 관계법령	.....	28

## 총괄표

취득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당초		12	65,956.30	40,232,533
	변경				
	증감				
건물	당초	4		18,089.25	37,550,000
	변경	5		26,024.07	49,023,000
	증감	1		7,934.82	11,473,000
기타	당초	1			128,000
	변경				
	증감				

처분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당초		86	828,957.75	268,082,137
	변경		99	830,931.65	269,676,488
	증감		13	1,973.90	1,594,351
건물	당초	1		864.00	1,967,000
	변경				
	증감				
기타	당초	1			128,000
	변경				
	증감				

##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m<sup>2</sup>, 천원)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91,980.37	89,383,533			
2009-2	토지	중구 무의동	산143-1	임	115,934	23,294.00	1,302,135	무의아트센터 건립부지	관광진흥과 장	당초
2009-3	토지	중구 북성동1가	산2-10	공원	2,510.00	2,510.00	396,580	인천해양과학 관·인천항홍보 관 토지	항만공항지 원과장	당초
	토지	"	106-5	잡	320.00	320.00	66,880	"	"	당초
	토지	"	산2-10 인접빈지		2,637.00	2,637.00	416,646	"	"	당초
	토지	"	산2-10 전면 (매립중)		16,658.00	16,658.00	9,161,900	"	"	당초
2009-4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8			4,960.00	12,583,000	통합데이터센터	정보화담 당관	1차 변경
2009-5	토지	서창동	2택지 차고1		14,406.00	14,406.00	23,530,000	남동권역 버스공 영차고지 건립 토 지	버스정책과 장	2차 변경
	건물	"	"		4,322.00	4,322.00	6,000,000	남동권역 버스공 영차고지 건립 건물	"	"
2009-6	건물	중구 신흥동3가	70-1		864.00	864.00	1,967,000	남항○○부대 대체시설물(건물) 취득	종합건설 본부장	"
	공작물	"	"				128,000	남항○○부대 대체시설물(공작 물) 취득	"	"
2009-7	토지	계양구 계산동	1079-3	대	1,650.00	1,650.00	4,026,000	공영주차장 부지 교환	교통관리과 장	3차 변경
2009-8	토지	남구 문학동	349-6	사적	979.30	979.30	296,727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문화재과장	"
	토지	"	349-7	"	1,167.80	1,167.80	353,843	"	"	"
	토지	"	349-8	"	1,494.20	1,494.20	452,742	"	"	"
	토지	"	349-9	"	740.00	740.00	224,220	"	"	"
	토지	"	산40-6	임야	179.00	100.00	4,860	"	"	"
	건물	"	349-6 외 4			7,943.25	17,000,000	"	"	"



##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m<sup>2</sup>, 천원)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831,795.65	271,771,488			
2009-1	토지	서구 원창동	440-1	잡	767,286.70	767,286.70	250,135,464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원담 당관	2차 변경
	"	"	410-27	잡	25,129.20	25,129.20	6,357,688	"	"	"
	"	"	413-3	잡	3,962.60	3,962.60	1,002,537	"	"	"
	"	중구 을왕동	179-107	대	134.00	134.00	79,328	"	"	"
	"	"	179-243	전	122.00	122.00	29,890	"	"	"
	"	"	179-248	대	54.00	54.00	11,718	"	"	"
	"	"	179-250	대	28.00	28.00	6,076	"	"	"
	"	"	179-254	전	88.00	88.00	21,560	"	"	"
	"	"	179-256	전	26.00	26.00	2,652	"	"	"
	"	"	179-261	전	265.00	265.00	66,515	"	"	"
	"	"	179-270	전	230.00	230.00	66,240	"	"	"
	"	"	179-274	전	235.00	235.00	67,680	"	"	"
	"	"	179-276	대	138.00	138.00	77,970	"	"	"
	"	"	186-1	전	52.00	52.00	5,980	"	"	"
	"	"	186-5	전	24.00	24.00	2,760	"	"	"
	"	"	189	답	50.00	50.00	4,785	"	"	"
	"	"	189-1	답	42.00	42.00	4,019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09-1	토지	중구 을왕동	200-6	도	37.00	37.00	4,255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원담당 관	2차 변경
	"	"	204-5	전	271.00	271.00	102,438	"	"	"
	"	"	206-3	답	23,273.00	20,745.25	6,431,028	"	"	"
	"	"	207-1	답	103.00	103.00	29,870	"	"	"
	"	"	208-1	답	636.00	636.00	184,440	"	"	"
	"	"	209-3	답	91.00	91.00	26,390	"	"	"
	"	"	210-1	답	530.00	530.00	153,700	"	"	"
	"	"	211-1	답	113.00	113.00	32,770	"	"	"
	"	"	212-1	답	63.00	63.00	18,270	"	"	"
	"	"	213-3	답	46.00	46.00	13,340	"	"	"
	"	"	219-1	답	155.00	155.00	40,300	"	"	"
	"	"	220-6	답	130.00	130.00	29,640	"	"	"
	"	"	220-10	답	133.00	133.00	29,526	"	"	"
	"	"	220-11	답	110.00	110.00	9,438	"	"	"
	"	"	220-12	답	270.00	270.00	67,500	"	"	"
	"	"	221-1	답	175.00	175.00	45,500	"	"	"
	"	"	222-1	답	323.00	323.00	83,980	"	"	"
	"	"	227-1	답	9.00	9.00	1,989	"	"	"
	"	"	228-1	답	193.00	193.00	48,636	"	"	"
	"	"	230-1	답	867.00	867.00	225,420	"	"	"
	"	"	232-1	답	83.00	83.00	21,58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09-1	토지	중구 을왕동	233-1	답	140.00	140.00	36,400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원담당 관	2차 변경
	"	"	233-4	답	477.00	477.00	124,020	"	"	"
	"	"	234-13	답	7.00	7.00	805	"	"	"
	"	"	234-14	답	7.00	7.00	1,841	"	"	"
	"	"	234-15	답	3.00	3.00	789	"	"	"
	"	"	236	답	101.00	101.00	29,290	"	"	"
	"	"	236-1	답	361.00	361.00	104,690	"	"	"
	"	"	622	답	22.00	22.00	6,160	"	"	"
	"	"	622-1	답	17.00	17.00	4,420	"	"	"
	"	"	622-2	답	9.00	9.00	2,340	"	"	"
	"	"	622-3	답	2.00	2.00	520	"	"	"
	"	"	622-4	답	13.00	13.00	2,873	"	"	"
	"	"	622-6	답	27.00	27.00	7,020	"	"	"
	"	"	622-7	답	25.00	25.00	2,145	"	"	"
	"	"	622-8	답	3.00	3.00	780	"	"	"
	"	"	622-9	답	1.00	1.00	260	"	"	"
	"	"	627-4	답	30.00	30.00	2,574	"	"	"
	"	"	627-5	답	65.00	65.00	16,380	"	"	"
	"	"	627-6	답	29.00	29.00	2,488	"	"	"
	"	"	627-7	답	10.00	10.00	2,520	"	"	"
	"	"	627-8	답	9.00	9.00	2,268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09-1	토지	중구 을왕동	627-9	전	27.00	27.00	7,344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원담 당관	2차 변경
	"	"	627-10	전	58.00	58.00	4,976	"	"	"
	"	"	627-11	전	180.00	180.00	15,444	"	"	"
	"	"	627-12	전	19.00	19.00	1,630	"	"	"
	"	"	627-14	답	123.00	123.00	30,996	"	"	"
	"	"	627-15	답	28.00	28.00	7,056	"	"	"
	"	"	627-16	전	19.00	19.00	5,168	"	"	"
	"	"	627-17	전	165.00	165.00	44,880	"	"	"
	"	"	627-19	답	22.00	22.00	1,888	"	"	"
	"	"	644-5	전	32.00	32.00	8,704	"	"	"
	"	"	644-7	전	9.00	9.00	2,448	"	"	"
	"	"	645-17	답	76.00	76.00	21,128	"	"	"
	"	"	645-18	답	7.00	7.00	601	"	"	"
	"	"	645-22	답	25.00	25.00	2,145	"	"	"
	"	"	645-23	답	778.00	778.00	66,752	"	"	"
	"	"	645-25	답	112.00	112.00	9,610	"	"	"
	"	"	645-39	답	53.00	53.00	4,547	"	"	"
	"	"	645-41	답	6.00	6.00	1,680	"	"	"
	"	"	645-44	답	7.00	7.00	1,820	"	"	"
	"	"	산58-1	임	201.00	201.00	42,813	"	"	"
	"	"	산59-3	임	60.00	60.00	12,78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09-1	토지	중구 을왕동	산59-4	임	26.00	26.00	6,396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원담 당관	2차 변경
	"	"	산59-5	임	60.00	60.00	16,200	"	"	"
	"	"	산59-6	임	603.00	603.00	128,439	"	"	"
	"	"	산59-10	임	41.00	41.00	7,831	"	"	"
	"	"	산59-11	임	263.00	263.00	68,906	"	"	"
2009-2	건물	중구 산흥동3가	70-1			864.00	1,967,000	남항○○부대 대체시설물 기부	종합건설본 부장	"
	공작 물	"	70-1				128,000	남항○○부대 대체시설물 기부	"	"
2009-5	토지	계양구 계산동	1079-4	주차 장	1,650.00	1,650.00	1,666,500	주차장 부지 교환	교통관리과장	3차 변경
2009-6	토지	남구 송의동	180-2	대	51.20	15.80	25,721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체육진흥과 장	4차 변경
	"	"	180-3	"	810.20	485.30	752,222	"	"	"
	"	"	180-24	"	222.10	135.80	152,075	"	"	"
	"	"	180-25	"	41.00	25.10	28,073	"	"	"
	"	"	180-31	"	52.20	31.90	51,060	"	"	"
	"	"	180-32	"	93.30	56.90	91,165	"	"	"
	"	"	180-33	"	140.20	85.70	125,996	"	"	"
	"	"	180-34	"	52.90	16.30	26,086	"	"	"
	"	"	180-36	"	46.30	28.30	45,289	"	"	"
	"	"	189-2	도	90.90	90.90	54,540	"	"	"
	"	"	424-39	체	120.30	89.50	29,535	"	"	"



# ① 도시개발공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추가 현물출자 계획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함.

## I.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유가증권 평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자본금)

## II. 도시개발공사 납입자본금(市 출자) 현황

(’09. 10. 30 현재 / 단위:억원)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					추가출자 가능금액
	계	현금	현물	채권	채무	
25,000	<b>18,233</b>	914	17,630	133	△444	<b>6,767</b>

## III. 금번 추가출자 대상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물건위치	재산종류	면적 (m <sup>2</sup> )	표준지 공시지가(원)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토지	송의동 180-2 외 12필지	일반재산	1,973.9	807.71	1,594,351	체육진흥과장

※ 출자대상 재산목록 “별첨1”

#### IV. 향후 추진계획

- '09.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제178회 정례회)
  - 출자대상 재산 인수인계(해당부서장 → 공기업민원담당관)
- '09. 12월
  - 감정평가 및 출자
    - 소유권 이전 : 시 → 도시개발공사

#### V. 참고자료

- 출자대상 재산목록 : 별첨 1
- 출자부지 위치도(용지도) : 별첨 2

『별첨 1』

# 출자대상 토지조사

(단위 : m<sup>2</sup>/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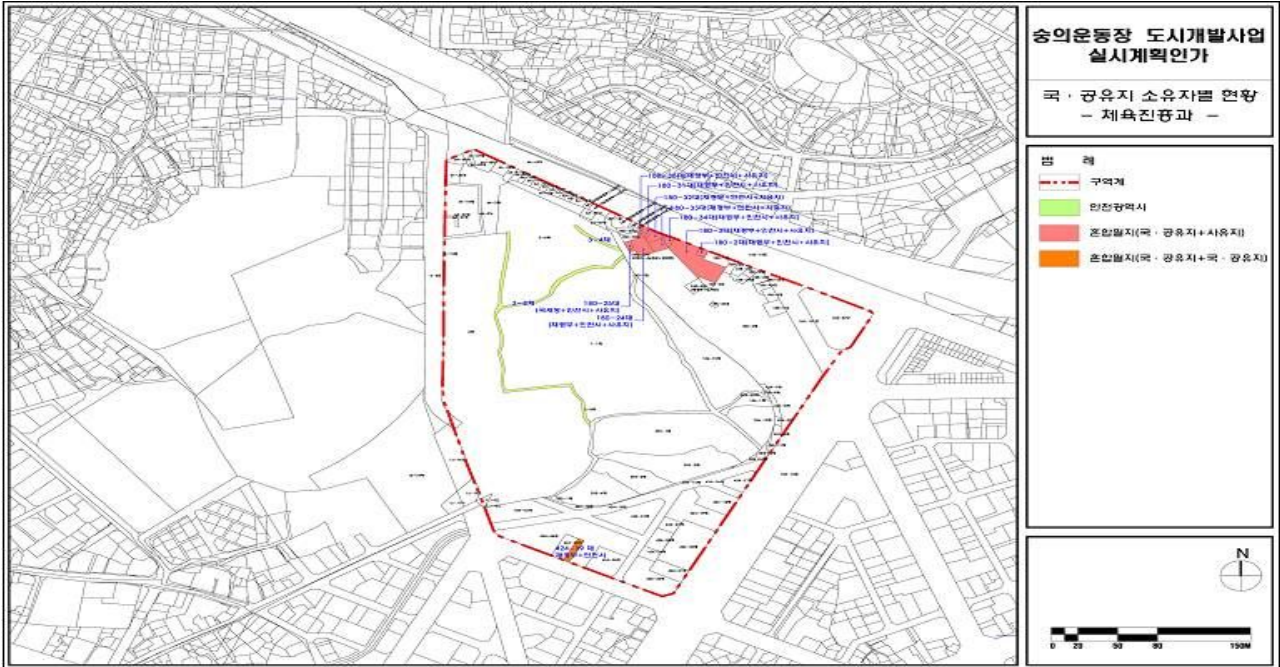
일련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2,633	1,973.9	1,594,351			
1	일반재산	송의동	180-2	대	51.2	15.8	25,721	현물출자	체육진흥 과장	
2	"	"	180-3	대	810.2	485.3	752,222	"	"	
3	"	"	180-24	대	222.1	135.8	152,075	"	"	
4	"	"	180-25	대	41.0	25.1	28,073	"	"	
5	"	"	180-31	대	52.2	31.9	51,060	"	"	
6	"	"	180-32	대	93.3	56.9	91,165	"	"	
7	"	"	180-33	대	140.2	85.7	125,996	"	"	
8	"	"	180-34	대	52.9	16.3	26,086	"	"	
9	"	"	180-36	대	46.3	28.3	45,289	"	"	
10	"	"	189-2	도	90.9	90.9	54,540	"	"	
11	"	"	424-39	채	120.3	89.5	29,535	"	"	
12	"	도원동	3-4	채	109.1	109.1	25,420	"	"	
13	"	"	3-8	채	803.3	803.3	187,169	"	"	
					"빈칸"					



『별첨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 ② 밀라노디자인시티·트리엔날레관 건축물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 계획

- 2008.11.13일 우리 시와 밀라노시 간에 협약 체결한 밀라노디자인시티 공동 건설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트리엔날레 전시관 건립 추진
  - 2009.9.15일 이태리 조르지오 나폴리따노 대통령 개관식 참석
-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시행자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이하 "FIEX"라 함)와 (주)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우리 시(경제청)에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채납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성공적 개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홍보관으로 사용코자 함.

### I. 기부채납 대상 시설 현황

- 위 치 : 중구 운서동 1632번지의 16필지(영종하늘도시)
- 시 설 명 : 밀라노디자인시티·트리엔날레관
- 건축면적 : 6,810.52㎡(연면적 : 7,934.82㎡, 지상 2층, 1개동)
- 구 조 : 가설건축물(철골조)
- 주 용 도 : 전시관(제1,제2), 밀라노시티 홍보관, 대회의실, 사무실 등
- 기 부 자 : FIEX, (주) 포스코건설

### II. 추진사항

- 2009.01.06 : 트리엔날레관 부지사용 임대차 계약(경제청 ↔ 토지공사, 도개공)
- 2009.01.06 : 트리엔날레관 사업 협약서 체결(경제청 ↔ FIEX)
- 2009.01.21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경제청)
- 2009.04.27 : 트리엔날레관 착공식
- 2009.06.22 : 기부채납 의사표시 신청(포스코건설, FIEX)
- 2009.07.01 : 기부채납 의사표시에 대한 의견 회시

- 2009.09.15 : 트리엔날레 개관식
- 2009.10.13 : 기부채납 신청서 제출

### III. 기부채납 개요

- 기부채납 조건 - 법정기부금 발급
- 취득가액 : 11,473백만원(포스코건설 9,490백만원, FIEX 1,983백만원)
  - ※ 공사원가 산정(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 기부의 목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일조
- 세부내역

구 분		바닥면적(m <sup>2</sup> )	주용도	비고
1층	제1관(전시장)	2,606	전시장	
	제2관(전시장)	941	전시장	
	홍보관 및 북샵	754	MDC 홍보 및 북샵	
	대회의실	270	회의실	
	통역실	109	통역실	
	전시장 창고	272	창고 및 체험실	
2층	사무실	490	업무	
	홍보관	212	영종하늘도시 홍보관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15조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IV. 검토 의견

- 가설건축물의 기부채납 가능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경우 기부채납 가능함.

※ 기부채납 후 향후 영구건축물로 전환 예정임.

- 따라서, 본 시설물은 우리 시와 밀라노시 간 협약 체결한 밀라노디자인 시티 건설을 위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발전에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어 포스코건설, FIEEX의 기부채납 의사를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V. 향후 활용계획(안)

### ① 상설 전시회 운영

- 경제자유구역청과 FIEEX 간 밀라노디자인시티·트리엔날레관 사업 협약에 따라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FIEEX와 관리위탁(무상)하여 상설 전시회 개최
  - FIEEX의 운영방안은 상설 전시회(수익시설)개최 등을 통해 운영비용 확보 예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가능

### ②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홍보

- 2008.11.13일 우리 시와 밀라노시 간 공동건설 협약 체결한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10개 유치기관에 대한 대시민 홍보
  - 트리엔날레 디자인전시관, IED 디자인스쿨, 베르디 국립음악원, 레오나르도다빈치 과학박물관, 세네마토 그래픽아, 라스칼라 아카데미, SPD디자인스쿨, Piccolo Teatro, IUSS PAVIA대학, Fiera Incheon 전시장

### ③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관 운영

- 영종하늘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홍보
-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 홍보

#### ④ 기타 부대시설 운영

- 카페운영 (밀라노의 정통 이태리 식당 체인 유치)
  - ※ 현 청담동에 영업 중
- 북샵 및 기념품점 운영
- 야외 미술전시회 운영

## VI. 향후 추진계획

- 2009.1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신청(경제청 → 市 회계계약심사과)
- 2009.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09.11 : 지방의회 의결
- 2009.12 : 공부정리(2개월 이내)

### ※ 참고자료

- 붙임 1 : 위치도 및 관련사진
- 붙임 2 : 기부채납신청서
- 붙임 3 : 기부채납협약서

「붙임 1」

【위 치 도】



【밀라노디자인시티 · 트리엔날레관 전경사진】



「붙임 2」

## 기부채납 신청서

### 1. 물건의 표시

- 가. 품 명 : 인천광역시 전시홍보관(이하 “인천홍보관”)
- 나. 위 치 : 인천시 중구 윤서동 산1066번지의외 16필지
- 다. 건축면적 : 6,810.52㎡
- 다. 연 면 적 : 7,934.81㎡
- 라. 규 모 : 지상 2층 1개동
- 마.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2. 기부자 명칭 : (주)포스코건설 외 1

- 대표자 : 정동화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 (첨부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첨부 2. 기부명세서 참조)

### 3. 기부의 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2014 인천아시아대회를 위한 홍보에 지속적으로 이용될 “인천홍보관”을 기부채납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에 일조하고자 함

### 4. 기부금액 : 첨부2 기부명세서 참조

### 5. 도 면 : 첨부4 참조

기부자는 위의 내용으로 “인천홍보관”을 기부채납하고자 서류구비하여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부명세서  
3. 공사원가 내역서  
4. 도면 1식, 끝.

2009년 10월 /3 일

기부자 :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 동 화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 대표이사 유 제 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 3」

인천광역시 전시홍보관  
기부채납 협약서

2009. 6. 3.

인 천 광 역 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전시홍보관 기부채납 협약서

###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32번지의 16필지에 건립될 인천광역시 전시홍보관(이하 “인천홍보관”이라 함)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채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제2조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인천광역시(이하 “갑”이라 하되 “갑”은 “갑”산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포함한다)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을”이라 함) 및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함)로 한다.

### 제3조 (목적물)

① “인천홍보관”의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32번지의 16필지
2. 연 면 적 : 7,937.2㎡
3. 규 모 : 지상2층 1개동
4.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가설건축물)

② “을”과 “병”은 “인천홍보관”을 건립하여 “갑”에게 무상 기부채납 하되, “을”과 “병” 각각의 기부채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을”	“병”
기부채납 내역	“인천홍보관” 건립 관련 1. 공동가설공사 2. 건축 및 건축마감공사 3. 전기 및 설비공사	“인천홍보관” 건립 관련 1. 전시관련 마감공사 2. 기타 “을”의 기부채납내역 이외의 공사 일체
기부채납 금액	금 일백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하되 “을”이 제시하는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병”이 제시하는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기부채납 일시	“을” 및/또는 “병”의 기부채납 내역 공사 완료후	

- ③ 본조 ①항의 “인천홍보관” 기부채납 내역에 대해 “을”과 “병”은 각자 책임과 비용으로 기부채납을 이행하기로 한다.
- ④ “인천홍보관” 기부채납 내역 관련 변경사항이 있거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을”과 “병”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단,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 ⑤ “인천홍보관”의 설계는 공기, 공사금액 등을 감안하여, “을” 또는 “병”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⑥ “인천홍보관”의 설계 저작권 사용 등 설계 관련 일체사항은 “병”이 설계업체로부터 사전 동의 또는 계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소송 등 문제 발생시에는 “병”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제4조 (“인천홍보관” 기부채납)

- ① “을” 및/또는 “병”이 “갑”에게 “인천홍보관” 기부채납 신청원을 제출시 “갑”은 이의없이 이를 접수하여 ‘09. 7.20까지 기부채납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즉시 이를 “을” 및 “병”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을” 및/또는 “병”은 제3조 ①항 기부채납내역에 따라 각자의 공사를 완료한 후 “갑”에게 “인천홍보관” 인수를 요청하고 “갑”은 “을” 및/또는 “병”의 인수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인천홍보관”을 인수하며 인수지연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갑”은 인수와 동시에 “을” 및/또는 “병”에게 “인천홍보관” 기부채납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 ③ “갑”은 “을” 또는 “병”중 일방이 기부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다른 기부자에게 기부 불이행자의 기부내역 이행을 강요하지 않으며, 제3조 기부채납 내역에 따라 기부를 완료한 자의 기부를 거부할 수 없다.

#### 제5조 (“인천홍보관”의 소유권)

“갑”이 “인천홍보관”을 인수 완료하기 전까지는 “인천홍보관”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는 “을”이 보유하고 “을”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6조 (“협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은 자동으로 해제·해지된다.

1. 본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간 합의로 본 “협약”을 해제·해지하기로 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의무이행 요청을 3회 이상 최고하였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제7조 (사후처리)

- ① 본 “협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갑”은 “을” 및/또는 “병”이 “인천홍보관” 부지의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없음을 확약한다.
- ② “갑”이 “인천홍보관” 기부채납 및 인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을”은 임의로 “인천홍보관”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제3자 등에 “인천홍보관” 공사물 일체를 처분할 수 있다.
  2. “을”은 “을”이 발주한 계약의 승계와 “을”의 투입비용 보상 등을 “병”에게 요구할 수 있고, “병”은 “을”의 요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을”의 요구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 ② “인천홍보관”과 관련하여 “갑”과 “을” 및 “병”간에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약 및 본 “협약”의 일부 당사자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개별계약이 본 “협약”과 상충될 경우, 그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 “협약”이 우선한다.

### 제10조 (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갑”, “을” 및/또는 “병”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다툼을 해결하기로 한다.

### 제11조 (“협약”의 원칙)

본 “협약”의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성실히 이행하며,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및 “병”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6월 3일

“갑”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상 호 : 인천광역시  
                          성 명 : 시 장 안 상 수 (인)

안 상 수

“을”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번지  
                          상 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성 명 : 대표이사 정 동 화 (인)



“병”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9 한진타워 9층  
                          상 호 : 피에라인천 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  
                          성 명 : 대표이사 유 재 현 (인)

유 재 현

## 관 계 법 령

### ▷ 현물출자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 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한다.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 기부채납 및 기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⑤ “생략”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08-20>
  6. <삭제 2001-08-2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